

이 보도자료는 2015. 12. 21.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2차장검사 김한수

전화 032-860-4303 팩스 032-860-4307

보도자료 2015. 12. 18.(금)

자료문의 : 외사부장실
전화번호 : 032-860-4404,5
팩스번호 : 032-860-4822
주책임자 : 외사부장 최용훈

제 목

尖端技術 開發을 빙자한 R&D 분야 국가보조금 사기 사범 수사결과

- 해외 유명대학 박사들이 중복된 연구과제를 신청, 허위 가공거래로 보조금 편취 -

- 인천지방검찰청(검사장 김진모) 외사부는 해외 유명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경력 및 '첨단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계획' 등을 내세워 R&D 분야 국가출연 보조금을 편취하고, 이를 숨기기 위하여 대규모 허위 가공거래를 일삼아 온 업자들을 수사한 결과,
 - ☞ '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' 등 7개 R&D 보조금 운용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총 8명(구속 4명)을 기소하였음
- 특히 ▲美國 서부 명문 0000大 공학박사 출신 등 국내·외 유명대학 석·박사 출신자들이 소위 '스펙'을 내세우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 내용을 운용기관에 고지하여 거액의 국가 R&D 보조금을 편취해 왔고, ▲그 과정에서 실사를 피하려고 보조금 신청업자들 상호간 교묘한 허위·가공 거래를 주고받는 '불법의 상부상조'를 통해 공생해 왔음을 확인함

1

수사 착안점 및 의의

① 해외 유명 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일탈 확인

- 美國 서부 명문 0000대, 0000 주립대, 중부 명문 000대, 000 주립대, 英國 000대 등 해외 유명 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해외학위 등 스펙을 앞세워 **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하고**, 마치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것처럼 꾸며 심사운용기관을 속이고 국가보조금(연구지원금)을 편취, 유용해 왔음을 확인

② 보조금 편취를 위한 허위 가공 거래 만연

- 국책연구과제(국가보조금인 연구지원금 교부대상 과제) 수행 업체들이 서로 허위가공 거래를 하고, 심사운용기관에 대하여는 마치 진정한 실물거래를 하거나 할 것처럼 통보한 후, 심사운용기관이 상대방업체에 송금해 준 연구지원금 상당액을 몰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
- 심지어 다른 업체의 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공거래, 비밀송금으로 협조하는 등 ‘불법의 상부상조’ 풍조마저 확산되어 ‘여러 업체들이 공생하면서 사슬처럼 얽힌 보조금 사기 업체들간 구조적 특징’을 규명

③ ‘국책과제 전문가(소위 보조금 멘토)’ 까지 등장

- ‘허위가공거래’ 등을 감추고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거둬 보조금을 수령하려는 ‘달콤한 유혹’에 빠지게 되는데,
- 한번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면, 신뢰도가 높아져 다른 국책과제 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, 결국 연구비(보조금) 수령액이 크게 팽창한 업체도 등장 ☞ 전문적인 R&D 분야는 개별 기술 상용화 또는 원천 기술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이 곤란한 사정에 기인
- 다액의 연구비(보조금)를 편취한 업자가 소위 ‘**보조금 멘토**’로 활동하면서 거래파트너 업체로 하여금 허위 보조금 신청을 부추기는 경우까지 등장

2

수사결과 및 주요 범행수법

① 수사결과
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총 7개의 국가 보조금 운용기관으로부터 국가 출연 R&D 분야 보조금(연구지원금)을 편취한 사범 총 8명을 인지, 기소함 (4명 구속, 4명 불구속)

① 미국 OOOO주립대학교 박사 ㄱOO는 A社 등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하고, 2013. 1. ~ 2015. 8.간 「제2세대 고온 초전도체접합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」 등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명목으로 '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', '(재)서울산업진흥원' 등 국가출연 보조금 운용기관들 6곳으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보조금(지원금)을 편취

- 美國 중부 OOOO 주립대학교 박사(금속공학 전공)학위 소지자(ㄱOO), 英國 OOO 대학교 박사(기계공학 전공)학위 소지자(ㄴOO), 美國 서부 OOO 주립 대학교 박사(재료공학 전공)학위 소지자(ㄷOO) 등 4명 공모

② 미국 OOOO 대학교 박사 ㄹOO 등 2명은 B社를 운영하면서 2014. 12.~2015. 8.간 「금속 및 세라믹 초미립자 분말 제조 기술 개발」 명목으로 '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'으로부터 약 1억 7,580만 원을 편취

- 美國 서부 OOOO 대학교 박사(재료공학 전공)학위 소지자(ㄹOO), 美國 OOO 대학교 박사(재료공학 전공)학위 소지자(ㅎOO) 등 2명 공모

③ OO대학교 공학석사 ㅈOO 등 2명은 C社를 운영하면서 2011. 10.~2015. 3. 간 「무방류 지향형 고효율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 개발」 등 명목으로 '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'과 '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'으로부터 합계 8억 6,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

- 약 25억 원 상당 허위 매입·출처별세금계산서 자료 제출 범행도 적발

♣ 피고인별 상세한 공소사실 요지는 【붙임 1】 「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」를 참조

♣ 보조금 편취 방식에 관해 대표적 사례를 분석한 도식은 【붙임 2】 자료 참조

② 주요 범행 수법

● 중복된 국책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을 통한 연구지원금 편취

- 동일,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서, 국책과제명 또는 내용 중 일부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여 중복된 과제 수행

※ 중복과제 수행시, 기존 특허의 재활용, 기 구입한 연구장비 재사용 등 이점이 있음

[사례] A社は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, 「고온 초전도 '세라믹」을 「고온 초전도 '마그넷」으로 과제명 일부만 변경

● 허위 가공거래·거래액 과대계상(조작)을 통한 연구지원금 편취

- ①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, ②일부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계상된 연구 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

※ 가공거래 조작과정시 이를 감추기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,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연적으로 수반됨

- 특히, ①의 경우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여러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, ②의 경우 연구과제수행에 부적합한 장비들을 운용기관의 '현장실사대비용' 으로 저가로 마련해 두어 '과제수행 부적합' 판정을 막아 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회피함

[사례]

- ▲ A社は 같은 장소를 소재지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D社 및 E社를 설립하여 각각의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
- ▲ B社の 경우, 극히 적은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기관 '실사대비'만을 목적으로 한 저가 장비를 마련
- ▲ C社の 경우, 3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실사대비용으로 고작 40여만원만 들여 **1개당 5만 원 상당의 전극 8개만**을 결과물로 제작

● 허위 연구인력을 등록, 인건비 명목의 연구지원금 편취

- 국책연구과제 수행 시 신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받는데, 친인척 등을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업체 대표들이 인건비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일부 인건비 자금을 함부로 회수

※ 허위로 등록된 직원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못하더라도, 4대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향유

● 허위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한 것처럼 꾸며 '매칭' 방식 연구지원금 편취

- '엔젤투자매칭펀드'는 국가 출연 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펀드인바, 이를 신청하여 지원받으려면 먼저 신청업체가 순수한 제3의 외부투자, 즉 '엔젤투자'를 유치한 다음, 그 외부투자(엔젤투자) 실적에 따라 매칭(matching)된 만큼의 펀드금 지원을 신청

- '제3의 외부투자'가 요건인 '엔젤투자매칭펀드'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경우, ①투자가 아닌 일시적 자금 차용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투자로 위장하거나(돈만 빌린 뒤 1~2달내 원리금을 변제), ②외부 자금이 아니라 업체 운영자의 자기자본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엔젤투자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둔 다음, 이를 외부투자로 가장함으로써 이른 바 '자본금 가장납입' 방식으로 제3의 순수한 외부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

※ 이와 같은 외부투자를 요건으로 펀드금을 지급받은 경우, 재차 이를 요건으로 하는 '투자연계' 국책과제까지 수주하여 추가 연구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악순환이 발생함도 확인

●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 부채를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여 편취

- 경영난에 처한 보조금 신청업체가 기존 미지급금 및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면서도 마치 연구과제 필요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, 특히, '정밀심사'를 대비하여 소액의 세금계산서까지 여러 장 작성해 두는 사례도 확인

3

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

- 'R&D 보조금은 눈 먼 돈'이라는 인식이 만연 ☞ 불법행위가 관행화
 - 연구지원금(보조금)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연구지원금 입금 즉시 바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사적 유용 또는 비자금 조성
 - R&D 연구를 위하여 '연구지원금'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, 연구지원금을 타 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처럼 꾸미는 '주객전도' 현상마저 팽배
 - 특히, 공학박사학위 소지자가 기술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, 연구비 신청만 전담하면서 '국책연구과제 목록'을 관리하는 '국책과제 전문가'로 활동
- ※ ㄱ〇〇(A社 대표) 스스로 '정부매칭투자 및 엔젤투자유치 등 투자유치경험 풍부한 경영자 및 투자유치 전문가(보조금 멘토)'로 자처
- 보조금 낭비 방지장치를 잠탈하기 위한 업체들간 허위·가공 거래 만연
 - 최근 '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' 등 보조금 운용기관은 RCMS(Real-Time Cash Management System,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운영시스템) 체계를 도입해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가 아니라 그 신청업체가 거래했다고 통보한 거래상대방업체에게 직접 연구비(보조금)를 지급, 결제하여 집행함으로써 보조금 편취·유용 등 재정 낭비를 방지하려고 노력 중
 - 그러나, 업체들간 허위 가공거래를 한 자료를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심사운용기관에 제출하여 거래상대방업체로서 보조금을 타 낸 다음, 이를 신청업체에게 몰래 되돌려 줌으로써 심사운용기관의 방지노력을 잠탈하는 등 '불법의 상부상조'가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
- 조세질서 교란¹⁾ 등 제3의 범죄 조장
 - 피고인들 일부는 편취 과정에서 가공거래처의 직인만 찍힌 세금계산서를 소지하면서 임의로 수신판장의 허위 매입·매출계산서를 발행, 세무서에 제출

1) 그 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협조한 업체들은 이를 악용하여 개인 비자금을 조성

- ①허위 매입세금계산액>허위 매출세금계산액일 경우, 부가세를 부정환급받고, ②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, 매출대금을 가공거래처의 차명계좌로 반환하여 업체의 비자금 조성이 가능, 결국 법인세 탈루 초래

-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양산 우려

- A社の 경우, 이전받은 특허를 이용해 수개의 특허를 추가 등록한 다음, 차세대 고온초전도체접합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홍보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고, 업체를 매각하려고 계획
- 이와 같이 고도로 전문적인 첨단 과학기술정보 영역에 어두운 일반 국민 상대로 장래 가치가 희박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'국책연구과제 수행' 및 '국가출연 보조금 수령' 경력을 일반 투자자 유인 수단으로까지 악용

※ 상기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조금집행시스템 일원화 방안 등 제도 및 실무운용 개선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(법무부 '클린피드백 시스템' 활용). 끝.

【붙임 1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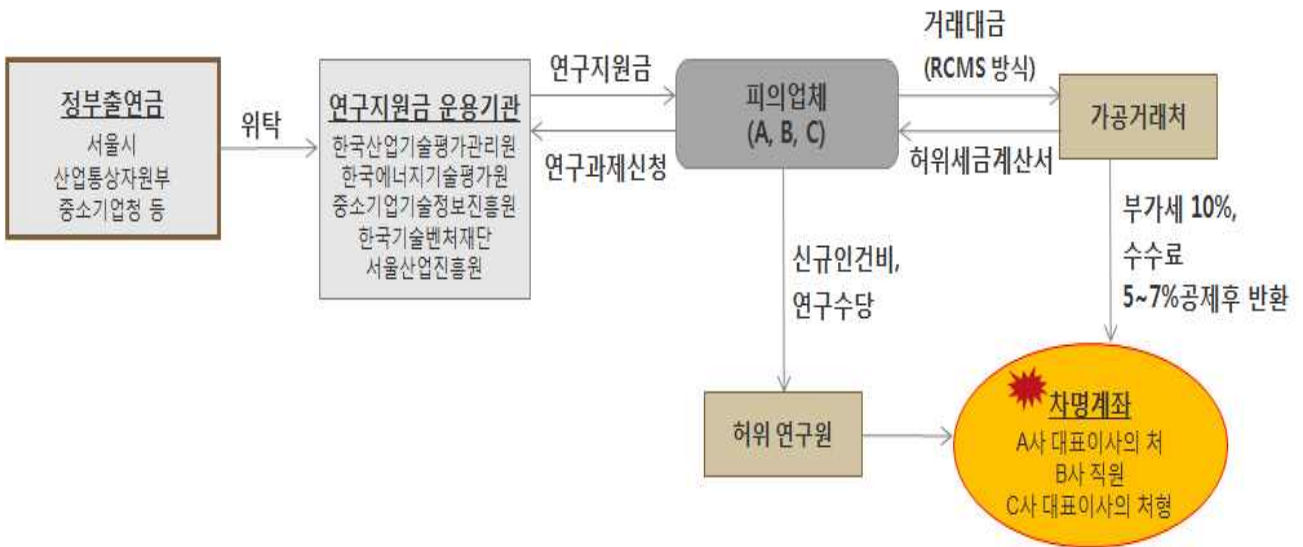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순번	업체명	피고인	범죄사실	처분
1	A사 (인천 소재)	ㄱ○○ (57세, A사 대표)	- '13. 1. 1. ~ '14. 12. 31. 사이에 한국기술벤처재단으로부터 221,980,178원을 편취	구속기소 (‘15. 9. 24.)
		ㄴ○○ (58세, A사 이사)	- '13. 9. 1. ~ '15. 8. 30. 사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328,451,949원을 편취 - '14. 1. ~ '15. 2. 한국벤처투자(주)로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금 286,000,000원을 편취	구속기소 (‘15. 9. 24.)
		ㄷ○○ (61세, A사 이사)	- '14. 2. 5. ~ '15. 1. 12. (재)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99,927,273원을 편취	불구속기소 (‘15. 9. 24.)
		ㄹ○○ (45세, A사 부장, 허위 직원)	- '15. 8. 4. ~ '15. 9. 3.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157,000,000원을 편취 - '14. 3. 및 '14. 9. 고용노동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,800,000원을 편취	불구속기소 (‘15. 9. 24.)
2	B사 (수원 소재)	ㅁ○○ (59세, B사 대표)	'14. 12. 4. ~ '15. 9. 30. 사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175,807,941원을 편취	구속기소 (‘15. 11. 6.)
		ㅂ○○ (60세, B사 이사)		불구속기소 (‘15. 11. 6.)
3	C사 (부천 소재)	ㅅ○○ (46세, C사 대표)	- '11. 10. 1. ~ '13. 9. 30.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528,600,000원을 편취 - '12. 10. 23. ~ '15. 3. 13.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331,808,148원을 편취	구속기소 (‘15. 12. 10.)
		ㅈ○○ (42세, C사 이사)	- '13. 1. 25. ~ '15. 10. 21. 합계 25억 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매입·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	불구속기소 (‘15. 12. 10.)

【붙임 2】

대표사례 : A社の 국가출연 보조금 편취 방식

[R&D지원금 편취]



[엔젤투자 매칭펀드금 및 투자연계과제 지원금 편취]

